

세법연구 08-07

주요국의 근로복지 세제지원에 대한 비교연구

2008. 9

김 진 · 김정아 · 문예영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및 문제점	9
1. 개요	9
가. 근로복지기금제도 의의 및 연혁	9
나. 근로복지기금제도의 주요 내용	10
다. 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현황	12
2.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6
가.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과세체계	16
나.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근로복지소득 과세제도	17
다. 근로복지지원금을 제외한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9
3.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23
가. 근로복지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23
나. 근로복지지원금에 대한 과세성격 논란	24
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요건 미비	25
III. 주요국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6
1. 미 국	26
가. 근로복지소득(Frings Benefit)의 개요	26
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8
다. 근로복지소득 가치평가 규정(Frings Benefit Valuation Rules)	37
2. 일 본	38
가. 근로복지소득의 개요	38
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40

3. 영 국.....	44
가. 근로복지소득의 개요.....	44
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44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52
1.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52
2. 요약 및 시사점.....	55
참고문헌.....	59

표 목 차

〈표 II-1〉 2006년도 근로복지기금 조성 현황.....	14
〈표 II-2〉 2004년 규모별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리비.....	15
〈표 III-1〉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8
〈표 III-2〉 양로보험의 과세.....	42
〈표 III-3〉 정기보험의 과세.....	43
〈표 IV-1〉 주요국의 급여 외 복리후생에 대한 과세.....	53
〈표 IV-2〉 주요국의 주택지원에 대한 과세.....	53
〈표 IV-3〉 주요국의 학자금에 대한 과세.....	54
〈표 IV-4〉 주요국의 체육시설에 대한 과세.....	54
〈표 IV-5〉 주요국의 보육급여에 대한 과세.....	55
〈표 IV-6〉 주요국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	56

그림 목차

[그림 II-1] 근로복지기금 도입 연도별 분포('06년 6월 현재).....	13
[그림 II-2] 2005년 기금사업 실시 여부.....	14
[그림 II-3] 2005년 기금 사업별 사업비 비중.....	15

I. 서론

- 1980년대 경기활성화 대책¹⁾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사내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1993년 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 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사업 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장학금, 우리사주 구입비, 재난구호금, 생활안정자금, 구판장 운영, 체육·문화사업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로 근로자복지의 실현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 사업주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정시 전액 손비로 인정되고 근로자 수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짐

- 현행 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볼 때 조세지출의 증가 및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임
 - 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1,500억원 이상으로²⁾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조세지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야기됨
 -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³⁾이며, 근로자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진적인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4% 미만⁴⁾임

1)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및 법인세의 인하

2) 박찬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와 연합기금 논의」, 『노동리뷰』, 제37호(2008.1), 노동연구원, p. 54

3) 한국노동연구원(2006),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4) 박찬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와 연합기금 논의」, 『노동리뷰』, 제37호(2008.1), 노동연구원,

-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근로복지지원금은 포괄적 의미의 근로복지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복지소득에 비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세제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임
 - 조사 대상 국가에서는 근로복지기금과 같은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제공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근로자가 제공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세제를 비교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다만, 소득공제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므로 연구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주요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근로복지소득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및 문제점

1. 개 요

가. 근로복지기금제도 의의 및 연혁⁵⁾

- 1992년 근로복지기금이 법제화된 이후, 2001년까지 개정되어 옴
 - 1983년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운영 준칙”을 제정하여 기업주에게 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행정지도하는 것에서 시작
 - 1992년 법제화⁶⁾된 내용은 근로복지기금을 사내에 두고 이 기금에 회사의 수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와 기금운용수익을 이용하여 당사의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공동의 운영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액수로 하여 자발적으로 출연
 - 2001년 주요 개정사항
 - 당해연도 출연금의 30%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한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축적기능보다는 당장의 근로자 복지기능을 더 강조
 - 대부사업과 용도사업의 분리
 - 외환위기 이후 사업의 폐지 등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여 사업의 폐지시 잔여재산의 근로자 배분과 기금의 분할·합병에 대한 근거 마련
 - 기금협의회의 선정방식 변경

5) 한국노동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확대방안 연구」, 2006, p. 11

6) 1991.8.10 법률 제4391호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1992.1부터 시행

나. 근로복지기금제도의 주요 내용

- 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에 회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여 복지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 회사의 “세전순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와 기금운용수익을 이용하여 당사의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임
- 정부는 근로복지기금의 제공자(기업)와 수혜자(근로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에 대한 자발성을 유도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에 대해서는 출연금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일정금액 내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음
 - 혜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1) 기금의 조성 및 증식 방법

- 기금의 조성
 -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접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증권투자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기금의 용도 및 지배구조

□ 기금의 용도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근로자복지시설로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미니업, 여가·체육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 대부
 - 근로자가 주택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 지배구조

- 기금은 법인으로 함
- 기금협의회 구성은 노사 동수 각 3~7인, 임기 1년, 과반수 노조는 노조측, 노사 협의회가 있으면 노사협의회로 대체함
- 기금협의회의 기능
 -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여부 결정
 -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 합병
- 임원
 - 이사 및 감사는 노사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비상근 이사 및 1인의 감사, 임기 2년

- 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을 수행

3) 기금의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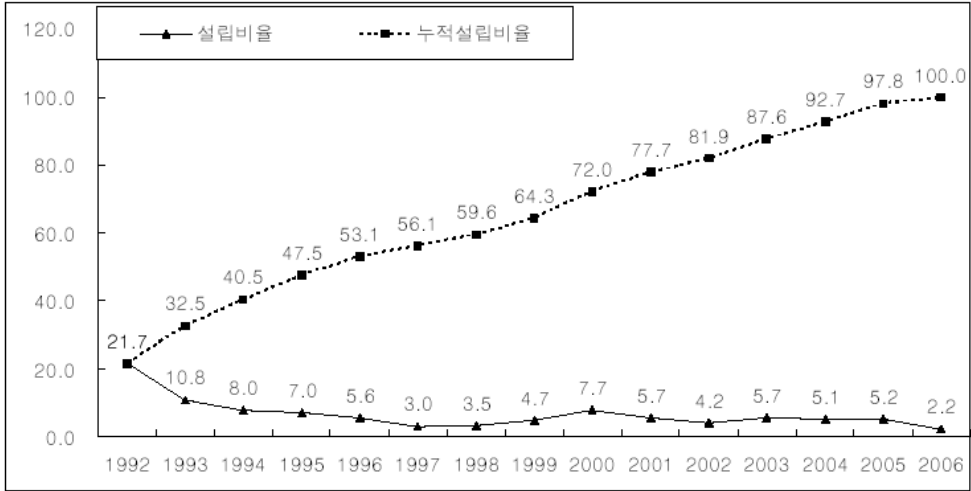
- 기금의 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름, 다만, 정관으로 규정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기금은 자금차입할 수 없음
 -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함
 -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법인과 별도로 존재 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따라서, 법인의 임의대로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용을 결정할 수 없음
 - 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의하여 근로복지기금은 운용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다. 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현황⁷⁾

- 근로복지기금은 법제화 초기에 가장 많이 도입되었으며,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 여 2006년 6월 현재 총 1,104개의 기금이 도입, 기금 총액은 6조 3,961억원임
 - 1992년 설치비율이 21.7%로 높은 이유는 동년 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되면서 과 거 노동부 준칙에 의하여 운영되던 기금의 다수가 동년 및 익년에 걸쳐 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7) 한국노동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확대방안 연구」, 2006, pp. 15~34

[그림 II-1] 근로복지기금 도입 연도별 분포('06년 6월 현재)



주: N=1104.

자료: 노동부(2006), 「200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 원자료.

□ 2006년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은 다음의 <표 II-1>과 같음

- 2006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는 1,098개이고, 전체 기업 수의 0.5%에 해당함
-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설립한 기금의 수는 598개로 전체의 54.5%이지만, 이는 중소기업 전체 기업 수의 0.3%에 불과한 수치임
- 설립률과 기금평균액은 규모가 클수록 커져서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설립률이 70%, 기금평균액이 220억원 가량임
- 대기업의 경우 기금설립률도 높고 기금액도 큰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금설립률도 낮고 기금액도 적음

〈표 II-1〉 2006년도 근로복지기금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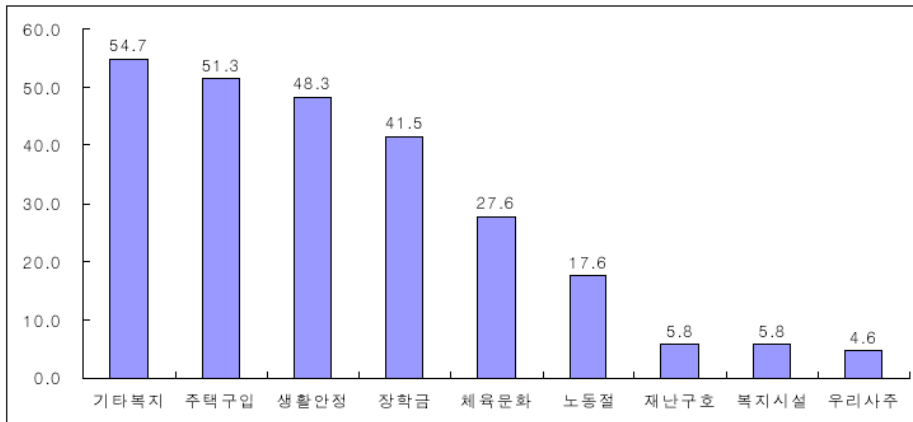
(단위: 개, 억원, %)

구분	계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499명 미만	500명 이상~ 999명 미만	1,000명 이상
기금 수(A)	1,098	598	130	162	208
구성비율	100.00	54.5	11.8	14.8	18.9
업체 수(B)	207,385	205,493	1,004	588	300
설립률(A/B)	0.5	0.3	12.9	27.6	69.3
기금액(C)	67,506	9,620	2,746	9,420	45,720
기금평균액(C/A)	61.5	16.1	21.1	58.1	219.8

주: 전체 업체 수 → 2005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10인 이상)
 자료: 노동부(2007), 『노동백서 2006』.

- 2005년 근로복지기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9개의 사업 중 2005년 기금으로 운영한 사업은 평균 2.6개이며, 사업을 하나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11.3%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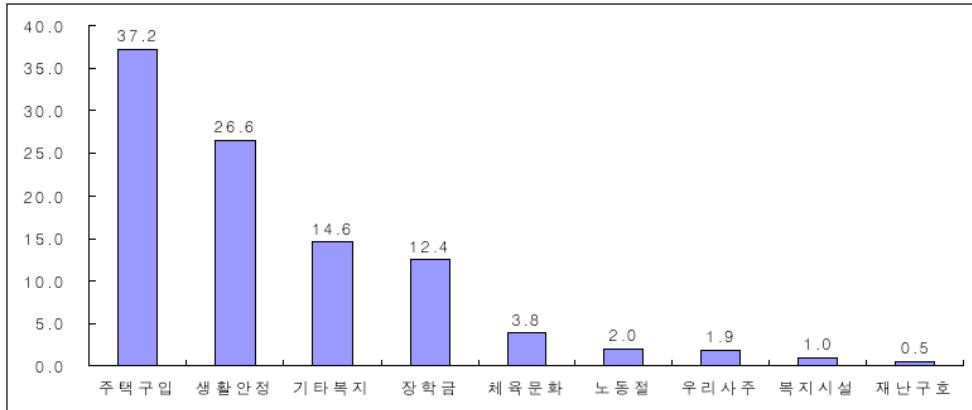
[그림 II-2] 2005년 기금사업 실시 여부



주: 2005년 한 해 해당사업을 실시한 기업의 비중. 사업은 지원사업과 대부사업이 혼재
 자료: 노동부(2005),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N=1035).

- 2005년 기준 기금 사업별 사업비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자금구입지원, 생활안정자금, 장학금이 가장 높으며, 이 3가지를 합치면 총사업비의 76.2%를 차지

[그림 II-3] 2005년 기금 사업별 사업비 비중



주: 2005년 한 해 전체 사업비에서 해당사업비의 비중(%), 2005년 사업지출이 없는 경우를 제외(N=926).
 자료: 노동부(2005),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 원자료.

- 근로복지기금은 규모간 복지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는데, 2004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규모를 세분화하면 격차지수 및 금액 차이는 1,000 이상 기업에서 특히 증폭됨

<표 II-2> 2004년 규모별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지비

(단위: 천원)

식사	식사	기타	학비	주거	보험	문화 체육	의료 보건	복지 기금	경조	우리 사주	휴양	저축	보육	합계	
중소기업	75,0	16,1	4,5	5,6	4,9	5,4	3,3	1,2	4,0	0,2	1,9	0,3	0,1	122,7	
대기업	60,4	37,1	26,1	14,1	14,2	11,2	10,8	13,8	8,5	10,1	5,1	3,3	0,5	215,3	
격차	80	230	580	251	289	207	327	1150	212	5050	268	1100	500	175	
차액	-14,6	21,0	21,6	8,5	9,3	5,8	7,5	12,6	4,5	9,9	3,2	3,0	0,4	92,6	
30~	격차	91,2	291,0	300,0	121,4	133,3	173,0	144,4	1300,0	102,6	300,0	100,0	60,0	100,0	114,3
99	차액	-7,3	12,8	2,8	1,2	1,5	2,7	1,2	1,2	0,1	0,2	0,0	-0,2	0,0	16,2
100~	격차	81,7	319,4	564,3	75,0	88,9	159,5	122,2	2100,0	110,5	200,0	147,1	40,0	200,0	108,8
299	차액	-15,1	14,7	6,5	-1,4	-0,5	2,2	0,6	2,0	0,4	0,1	0,8	-0,3	0,1	10,0
300~	격차	74,3	435,8	922,9	85,7	88,9	294,6	163,0	2500,0	134,2	300,0	458,8	80,0	400,0	127,8
499	차액	-21,2	22,5	12,5	-0,8	-0,5	7,2	1,7	2,4	1,3	0,2	6,1	-0,1	0,3	31,6
500~	격차	71,4	291,0	1378,6	119,6	120,0	197,3	214,8	9500,0	126,3	900,0	223,5	240,0	400,0	126,5
999	차액	-23,6	12,8	17,9	1,1	0,9	3,6	3,1	9,4	1,0	0,8	2,1	0,7	0,3	30,1
1000	격차	73,5	661,2	2228,6	333,9	431,1	337,8	514,8	17900,0	276,3	15300,0	288,2	920,0	700,0	224,1
이상	차액	-21,9	37,6	29,8	13,1	14,9	8,8	11,2	17,8	6,7	15,2	3,2	4,1	0,6	140,9

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기준은 상용근로자 300인, 격차는 [(중소기업/대기업)×100] 및 [(각 규모별/10~29인)×100], 차액은 (대기업금액-중소기업 금액) 및 (각 규모별 금액-10~29인의 금액).
 자료: 노동부(2006), 2004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http://laborstat.molab.go.kr/newWeb/intro/buy/buy_3jsp)

2.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가.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과세체계

□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기업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⁸⁾을 허용

○ 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

- 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⁹⁾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¹⁰⁾를 허용
- 근로복지기금이 그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¹¹⁾을 허용

○ 근로자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¹²⁾를 허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¹³⁾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유사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임차

8)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9)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하거나 개인재산을 출연한 경우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1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제5호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 제4항

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주택 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100 이하의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증여세가 비과세된 것)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¹⁴⁾

나.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근로복지소득 과세제도¹⁵⁾

-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음¹⁶⁾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품은 증여세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에 대한 근로소득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
 - 근로자가 불입하는 개인연금저축액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보조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세청 예규소득46011-2537, 1994.9.6)
 -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재경부 소득-67, 2003.12.13)

14)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단서

15) 한국노동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확대방안 연구」, 2006, pp. 66~68

16) 근로복지소득의 소득분류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서술하도록 함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것(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함)은 증여세가 비과세됨¹⁷⁾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주택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10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에 대한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질의〉

사내근로자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등을 기금수혜 대상에 포함(기금의 정관에 명시)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급받는 동 금품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17)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회신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와 규정이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하는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세청 예규 서면4팀-2148, 2005.11.11)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예규 서면1팀-1483, 2005.12.2)

다. 근로복지지원금을 제외한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근로복지지원금 외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1) 과세제외소득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¹⁸⁾

18)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 경조금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¹⁹⁾

□ 사업자가 부담한 다음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²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탕의 보험료 등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과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임직원손해배상보험료

□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²¹⁾

2)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다음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²²⁾

□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

-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함. 종업원인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함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20)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21)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 착용을 요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
-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에 한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다음의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에 준하는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위험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 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잠수부 위험수당, 고전압 위험수당, 폭발물 위험수당 등
-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기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방송, 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다만,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봄

3)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급여

□ 식사와 식사대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사대를 비과세함. 식사대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함

□ 학자금

-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함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업자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함

□ 보육급여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²³⁾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기능직 종사자 등에 대한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함²⁴⁾

3.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가. 근로복지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 근로복지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시킴

- 근로복지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조세지출은 1999년 이후 매년 1,500억원 전후이고 최대 3,100억원 이상이 되는 연도도 있었음
- 이러한 조세지출은 안정적이고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의 정규직에 편중되고 있음
- 이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근로복지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4%에도 미치지 못함

- 근로복지지원금을 통한 근로복지소득과 근로복지지원금 이외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남

2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동일한 실질을 가진 근로복지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근로복지지원금을 통한 근로복지소득인 경우 비과세되지만, 근로복지지원금 이외의 근로복지소득인 경우 과세되는 경우가 많음²⁵⁾
-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근로복지지원금의 비과세혜택을 현행보다 축소하여 과세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근로복지지원금에 대한 과세성격 논란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받는 근로복지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상속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법률이나 판례로 이에 대한 과세성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해석상 상속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받는 근로복지소득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등을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음
 - 즉, 근로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법인은 사회보험료나 분담금의 부담 및 퇴직금의 증액을 피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경제실질상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소득임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²⁶⁾하고 있음

25)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살펴보도록 함

26)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요건 미비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복지지원금 외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확대하고, 대신 이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엄격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복지지원금 내 근로복지소득보다 근로복지지원금 이외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음
 - 근로복지지원금 외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비과세를 허용해 주는 한도금액이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근로복지소득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현물급여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는 것이 타당함
 -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현물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허용해 주고 있음
 - 주요국에서는 현금 등의 환금성이 되는 근로복지소득 및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물급여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허용해 주고 있음

Ⅲ. 주요국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 미 국

가. 근로복지소득(Frings Benefit)의 개요

- 근로복지소득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지원 형태를 가짐
 - 예를 들어, 업무를 하기 위해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이를 근로복지소득으로 보는 것임

1)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모든 근로복지소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특정한 근로복지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함
-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게 됨

2) 선택적 복지제도(Cafeteria Plans)²⁷⁾

-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혜택대신에 과세소득이 되는 대상 또는 현금을 선택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의미함

27) 엄격한 의미에서 카페테리아 플랜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용어는 구분됨. 카페테리아 랜은 IRC규정에 있는 것으로 현금수취권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복리후생제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모두 해당됨. 요즘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임

- 만약 근로자가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혜택을 골랐다면 과세가 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이월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적격한 요건을 갖춘 401(k)²⁸⁾ 및 교육기관 근로자의 퇴직 후 특정한 생명보험(certain life insurance plan)의 이월되는 부분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함
-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현금과 근로복지소득으로 구성된 둘 이상의 혜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문서화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함²⁹⁾
 -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만을 수혜대상으로 함. 다만, 퇴직자(former)와 파견근로자(leased employee)도 포함함³⁰⁾
 - 선택적 복지제도의 비과세되는 금액 중에서 총근로복지소득의 25%가 핵심 간부에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과세함
 - 핵심 간부란 130,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근로자,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연봉 150,000달러 이상을 받는 주주인 근로자를 말함³¹⁾
 - 고액급여자에게 차별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
 - 위에서 고액급여자는 임원,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근로자, 고액급여자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³²⁾
 - 핵심 간부와 고액급여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과세 제외 근로복지소득을 받는 경우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함

28) 과세이연의 대표적인 형태로 일종의 퇴직보험료 개념임. 보험료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대신 퇴직 후 받게 될 때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29) IRC §125(d)(1)

30) IRC §141(n)(2)

31) IRS §416(i)(1)(A)

32) IRS §123(e)(1)

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전반적인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의 <표 Ⅲ-1>과 같음

<표 Ⅲ-1>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구 분	소득세 원천징수 (Income Tax Withholding)	사회보호 및 의료서비스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연방피고용세 (Federal Unemployment)
재해 및 건강관련 혜택 (Accident and health benefits)	비과세 ^{1,2} , 유연소비계정(a Flexible spending) 또는 이와 유사한 계정을 통해 제공되는 장기재해보험(long-term care) 제외	비과세,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S기업의 근로자에게 특정한 지급을 하는 보험은 제외	비과세
포상 (Achievement awards)	적격한 요건을 갖춘 포상에 대하여 \$1,600(비적격한 포상은 \$400)까지 비과세 ¹		
입양지원 (Adoption assistance)	비과세 ^{1,3}	과세	과세
체육시설 (Athletic fac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임차된 시설에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이고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들에 의해 역년(the calendar year) 동안 사용될 때 비과세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 (De minimis benefits)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탁아보조비 (Dependent care assistance)	\$5,000(맞벌이인 경우 각각 신고시 \$2,500)의 한도까지 비과세 ³		
교육지원 (Educational assistance)	각 연도의 \$5,250의 한도까지 비과세		
직원할인 (Employee discounts)	특정한 한도까지 비과세 ³		
근로자 스톡옵션 (Employee stock option)	자세한 내용 후술		

〈표 III-1〉의 계속

구 분	소득세 원천징수 (Income Tax Withholding)	사회보호 및 의료서비스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연방피고용세 (Federal Unemployment)
단체생명보험료 (Group-term life insurance coverage)	비과세	보험료의 \$50,000까지 비과세 ^{1,4}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있음)	비과세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s : HSAs)	HSA 기금한도까지 적절한 요건의 개인인 경우 비과세		
사업장의 숙박시설 (Lodging on your business premises)	근로여건으로서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할 경우 비과세		
음식(Meals)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 음식을 제공한 경우 비과세		
	소액의 경제적 이익만큼 제공한 경우 비과세		
이사비용상환 (Moving expense reimbursements)	근로자가 지급한 공제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비과세 ¹		
추가부담이 없는 용역 (No-additional cost services)	비과세 ³	비과세 ³	비과세 ³
퇴직계획서비스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비과세 ⁵	비과세 ⁵	비과세 ⁵
교통비 (Transportation benefits)	고속도로 자동차통행료(\$115한도) 및 적절한 요건의 주차장비용(\$220한도)을 비과세 ¹		
	소액의 경제적 이익만큼 제공한 경우 비과세		
학비경감 (Tuition reduction)	대학 학비(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 학비)에 대해서 비과세 ³		
근무여건 (Working condition)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S기업의 근로자는 제외
2. 자가보험의료비상환 플랜(Self-insured medical reimbursement plans)을 적용받는 특정한 고액 연봉자는 제외
3. 고액연봉자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제외
4. 핵심 간부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제외
5. 납세신고준비, 회계, 법적 또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해 및 건강 관련 혜택(Accident and Health Benefits)

- 사업자가 근로자의 질병·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 및 신체장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기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 적립하는 경우 그 납부보험료 또는 적립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³³⁾

2) 포상(Achievement Awards)

- 직원에게 무재해달성(safety achievement) 또는 업무의 연장(length of service)을 위해 수상하는 유형의 자산을 의미함
 - 현금,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 상품권(gift certificates) 또는 무형의 자산가치(여행권, 외식권, 숙박권, 극장 또는 스포츠 이벤트 티켓, 주식, 채권 및 기타 증권)를 가지는 것은 제외
 - 이 포상은 사업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자 포상의 요건³⁴⁾을 만족시켜야 함
- 근로자라 함은 아래와 같음
 -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 이전의 고용계약과 관련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이전 근로자
 - 근무중인 회사의 지시 아래에 있고,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풀타임 파견근로자
- S법인의 주주는 제외
 - S법인의 2%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함
 - 이때 2%는 의결권이 있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까지 포함하여 산정함
 - 다만, 근로복지소득(fringe benefit)의 목적을 위해서 파트너십의 파트너로서

33) IRC §105, §106

34) 아래의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
 - 포상구입비용이 근로자급여로써 기업의 비용처리될 수 있는 금액보다 큰 부분
 - 포상가치가 기업의 비용처리될 수 있는 금액보다 큰 부분

2%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다룬다면, 혜택을 2%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됨

- 근로복지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1,600이며, \$400 미만은 적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됨

3) 입양지원(Adoption Assistance)

- 입양지원제도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규정이 단체교섭에 의해 배제되는 여부보다 고용주의 선의에 의한 규정이라면 이에 대하여 입양지원제도로 인정해줌
 - 주주 또는 소유자로 있는 기간 동안 5% 이상의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주 또는 소유자로서 사업자의 이익 및 자본지분이나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것으로 봄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입양지원제도에 대한 공지를 제공해야 함
 - 근로자는 요건을 갖춘 비용의 지급 또는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됨
- 다만, 근로자가 직전연도 또는 어떤 시점에라도 회사에 대해서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전연도에 \$100,000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4) 운동시설(Athletic Facilities)³⁵⁾

- 사업자가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리조트시설의 일부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함
 -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35) IRC §132(j)(4)

25세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음

5) 소액의 경제적 이익(De Minimis Benefits)

-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소액의 경제적 이익(De Minimis Benefits)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 있음.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회사복사기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85% 이상 되어야 함
 - 명절선물 및 현금 등
 - \$2,000 이상 되지 않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사망에 대해서 지급되는 단체생명보험(Group-term life insurance)
 - 식사제공
 - 근로자를 위해 제공되는 파티 또는 연찬회
 - 공연 및 스포츠 경기 티켓
 - 교통비

- 근로자의 자녀양육보조(a dependent care assistance program)에 해당하는 금액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자녀양육보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5,000 이하까지 인정해줌
 - 맞벌이인 경우 연간 \$2,500 이하까지 인정해줌

6) 탁아보조비(Dependent Care Assistance)

- 어린 자녀 등 피부양자를 둔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자가 탁아소를 직접 운영하여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³⁶⁾

36) IRC §129

7) 교육지원(Educational Assistance)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내 또는 사외에서의 재교육의 기회를 준 경우 근로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교육관련 비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³⁷⁾

-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교재, 학원비 등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스포츠, 게임 및 취미생활을 위한 학원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사업과 관련 있거나 학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정해줌

8) 직원할인(Employee discounts)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받은 부분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할인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일반 고객의 판매에 제공되는 투자용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임³⁸⁾
 - 20% 이하의 할인율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됨

9) 직원스톡옵션(Employee Stock Options)

- 급여에 대한 사회보호 및 피고용세(FUTA)의 과세대상에 각 옵션의 행사로 인해 얻게 된 주식의 매도 또는 투자스톡옵션(an incentive stock option) 및 근로자스톡구입계획옵션(an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option)에 대해 2004년 10월 23일 이후부터 행사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IRS는 행사에 의해 얻게 된 주식의 매도 또는 투자스톡옵션(an incentive stock

37) IRC §127

38) IRC §132(a)(2), (c)

option) 및 근로자스톡구입계획옵션(an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option)에 대해 2004년 10월 22일까지 행사로 발생한 소득 역시 포함하지 않았음

- 하지만, 연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는 위의 스톡 옵션에 대하여 2004년 10월 22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

10) 단체정기생명보험료(Group-Term Life Insurance coverage)

- 생명보험약관이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단체생명보험료(Group-Term Life Insurance coverage)로서 인정됨
 -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망급여를 제공할 것
 - 사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것
 - 단체보험은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아래 제공될 것

11) 건강저축계정(Health Savings Accounts: HSA)

- 적절한 요건을 갖춘 현직 근로자 및 퇴직자에 의해 소유된 건강저축계정(HSA)은 근로자의 자산이 되며 이에 대해 사업자가 철회할 수 없음
 - 이 계정의 금액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의료비용으로 사용됨
 - 의료비용은 보험 등에서 지급된 비용이 아니어야 함
 - 건강저축계정(HSA)에서 사용된 의료비용은 개인의 연방소득세신고에서 의료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함

12) 사업장의 숙박시설(Lodging on Your Business Premises)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숙박시설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업장에 숙박시설이 있을 것
 - 이러한 숙박시설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할 것
 - 근로자가 근로조건(a condition of employment)으로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 근로자가 숙박시설 대신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세제혜택을 허용하지 않음

13) 음식제공(Meals)

- 소액의 경제적 이익의 음식(De Minimis Meals)이 제공된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커피, 도넛, 다른 음료수 등
 - 일회성 음식 및 초과근무에 따른 음식제공
 - 근로자를 위한 일회적인 파티 및 피크닉

- 사업장에서 제공되고,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사업장에서의 음식제공(Meals on Your Business Premises)은 소득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사업장의 음식제공 외의 다른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14) 이주비용 변제비용 제공(Moving Expense Reimbursements)

- 근로자가 사업자의 명령에 의한 근무지의 변경으로 이사를 할 경우 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상환하는 이사비용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³⁹⁾

39) IRC §132(a)(6),(g)

15)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는 용역(No Additional Cost Services)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초과수용능력이 있어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공급된 용역에 대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⁴⁰⁾. 단,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해당됨
 -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은 일반고객에게 판매되는 것이어야 함
 - 용역을 공급받는 근로자는 일반고객에게 공급하는 그 용역의 사업에 속해 있어야 함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16) 퇴직계획서비스(Retirement Planning Services)

- 사업자가 IRC Section 219(g)(5)에 규정된 적절한 요건의 퇴직계획서비스를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17) 교통비 혜택(Transportation Benefits)

- 사업자가 근로자의 출퇴근을 보조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통근버스, 버스, 전철의 승차권 및 주차장의 이용권이 해당됨⁴¹⁾

18) 학비경감(Tuition Reduction)

- 교육기관의 근로자 자신과 그 배우자 및 피부양자녀가 대학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경감받는 수업료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⁴²⁾

40) IRC §132(a)(1),(b).

41) IRS §132(a)(5), (5)

42) IRS §117(d)

다. 근로복지소득 가치평가 규정(Frings Benefit Valuation Rules)

-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가치평가 규정은 일반적인 가치평가 규정(the general valuation rule to value)과 특별한 가치평가 규정(the special valuation rule to value)으로 나눌 수 있음

-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 근로자가 내부자거래(an arm's-length transaction)에서 구입했거나 빌린 경우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평가는 제3자에게 지급했을 금액으로 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수단(Employer-provided vehicles)
 -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금액은 제3자에게 운송수단을 빌렸을 때 지급했을 금액으로 함

- 주행거리당 계산하는 운송수단임대료(Cents-Per-Mile Rule)
 - 근로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운송수단을 사용한 경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운송수단 주행거리당 기준율(the standard mileage rate)을 곱한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으로 계상됨
 - 개인목적이라 함은 사업자의 거래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⁴³⁾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함
 - 2008년 기준율(the standard mileage rate)은 1마일당 50.5센트임

- 출퇴근용 운송수단에 대한 규정(Commuting Rule)

43)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경우에 자동차가 사업자의 거래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봄

-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의 최소한 50% 이상이 사업자의 거래나 사업을 사용될 것
- 최소한 세 명 이상의 근로자의 통근을 위해 사용될 것
- 사업자의 거래 또는 사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될 것

- 회사 운송수단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편도 1.5달러로 봄
-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같은 운송수단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각 근로자에게 편도 1.5달러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봄
- 이에 대한 금액은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 등으로 보게 됨

□ 연간 임대비용(Annual Lease Value)

- 자동차에 대한 연간 임대비용은 자동차의 공정시장가치에 따라 달라짐
 - 자동차에 대한 공정시장가치 금액을 60구간⁴⁴⁾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구간마다 임대금액을 표시했음

2. 일 본

가. 근로복지소득의 개요

1)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특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음
 -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 받는 혜택은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 과세 여부가 판단됨
-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식사의 제공, 가격인하판매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함.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후술하도록 하겠음
 - 경제적 이익의 평가금액은 “현물 또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해당 이익을 누릴 때의 금액”으로 보고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44) 자동차의 공정시장가치를 0달러부터 59,999달러까지 60구간으로 구분하고 600달러부터 15,250달러까지의 임대비용을 공시하고 있음

- 일본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해 주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의 및 개념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개별항목의 취급에 있어서 비과세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이 경제적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함
 -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업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육아 등에 대해서 대부분 비과세가 되지 않는 데 반하여, 요구가 낮아지고 있는 사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경제적 현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최근 일본에서도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2)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과세제도

-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포인트의 부여를 하고 부여된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 일정한 요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각종 건강진단의 비용의 보조나 영화·연극구경 티켓의 구입대금의 보조 등의 약 50종류의 메뉴 중에서 선택함
 - 잔여포인트를 차년도에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정산할 수 없음
 -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와 관련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그 포인트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그 서비스의 내용에 의해서 과세·비과세를 판단하게 됨.
 - 과세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원·종업원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이어야 하고, 임원·종업원의 직무상의 지위나 보수액에 비례해 포인트가 부여되는 것은 과세가 됨. 그리고, 현금성이 있는 것은 과세가 됨⁴⁵⁾.
 - 계약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의 일반 요금과 할인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전 종업원 등이 일률적으로 공여를 받는 것인 한, 과세하지 않음⁴⁶⁾

-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는 법인세법의 접대비나 기부금과 다르게 복리후생비

45) 소득세법 제36조, 소득세 기본 통칙 36-29

46) 소득세 기본 통칙 36-29

에 대한 손실금 산입의 한도액 등은 없음

- 접대비로 간주하게 되면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넣어서 산출
- 현물급여로 간주하게 되면 법인세의 계산상 손비로 처리되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종업원에 대해서 소득세나 주민세가 과세됨

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 식사의 제공

- 사업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엄격히 따지고 있음
 - 중식비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사업자 부담이 1인당 월 3,500엔 이하의 경우 과세하지 않음
 - 초과근무시 식사의 제공은 과세하지 않음
 - 숙직 등의 심야근무시 식사의 제공은 1인당 월 근무 1회에 한하여 300엔 이하의 경우 과세하지 않음

2) 제복 등의 지급

-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에서만 착용하게 되는 제복 및 작업복을 지급 또는 대여했을 경우 과세하지 않음

3)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등⁴⁷⁾⁴⁸⁾

- 장기 근속자를 표창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념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는 것에 한정해서 과세하지 않음

47)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했을 경우나 자유선택이 가능한 기념품을 지급한 경우 전액 근로소득으로 봄

48) 여행상품권이나 여행쿠폰권을 지급했을 경우 여행지나 여행사의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함

4) 창업 기념품 등

- 창업기념이나 신사옥 완성기념을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보는 것에 한정해서 과세하지 않음

5) 가격인하판매⁴⁹⁾

- 근로자에게 가격을 인하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판매가액이 구입가격 이상일 것
 - 통상 판매가격의 70% 이상일 것
 - 가격인하율이 임원을 포함하여 전 사원에게 동일할 것
 - 가사에만 사용하기 위한 것

6) 금전의 대여

- 일반적인 금전의 대여의 경우에는 무이자 또는 현저하게 낮은 이자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재해나 질병 등에 의한 요인에 의해 대여를 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주택취득자금의 대여는 무이자 또는 연 1% 미만의 이자율로 대여⁵⁰⁾해 주었을 때만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임원 및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49)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50) 실제로 지불한 이자상당액 - 무이자 또는 연 1% 미만의 이자율로 계산 이자 = 근로소득

7) 용역제공

- 세탁소, 미용실, 운송업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고액이거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음

8) 사업자 부담의 레크레이션 비용

- 사업자 부담의 레크레이션 비용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여행기간이 4박 5일 이내인 것
 - 전 종업원의 50% 이상이 참가할 것
- 불참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의 형편에 의해 불참했을 경우에는 불참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개인사정에 의해 불참했을 경우 참가자와 불참자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9) 사업자계약의 생명보험 계약 등

- 임원 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업자 계약의 생명보험계약 등의 과세는
- 양로보험⁵¹⁾의 경우 아래와 같음

〈표 Ⅲ-2〉 양로보험의 과세

구분	사망보험금	생존보험금	주계약의 보험료	특약보험료
보험금수취인	사업자		비과세	
	근로자 등의 유족	근로자 등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자 등의 유족	근로자	비과세*	

비과세* - 다만, 임원 또는 특수관계자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1/2 과세하고 있음

51) 생사혼합보험의 종류

○ 정기보험⁵²⁾의 경우 아래와 같음

〈표 III-3〉 정기보험의 과세

구분	사업자	주계약의 보험료	특약보험료
보험금수취인	사업자	비과세	비과세*
	근로자 등의 유족	비과세*	

비과세* - 다만, 임원 또는 특수관계자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1/2 과세하고 있음

10) 사업자 계약의 손해보험계약 등

- 근로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업자 계약의 손해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임원 또는 특수관계자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료에 대해서 급여 등으로 과세하고 있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과세되지 않음
 - 사업자가 계약자일 것
 - 근로자 등의 신체 또는 자산을 보험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 임원 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 보험금 수취인이 사업자일 것

11) 근로자 계약의 보험료 등

- 사업자가 근로자 등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나 부금을 부담했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 등이 계약한 생명보험 계약
 - 사회보험료
 - 소규모 기업공제 등 부금
 - 월 300엔 이하의 소액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에 대해서 임원 또는 특수관계자만

52) 사망보험의 종류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음

3. 영 국

가. 근로복지소득의 개요

-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2003년 4월 “2003년 소득세법(the Income Tax(Earning and Pensions) Act 2003(ITEP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소득에 관한 관련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음
 - 영국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외의 소득에 대한 정의 개념과 소득에 대한 산정방식이 개별 항목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받은 급여 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부과 금액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음
 - ① “금전 가치” 원칙(the “money’s worth” rule)
 - ②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칙(specific rules to all employees)
 - ③ 이사(理事)와 특정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 “금전 가치” 원칙(the “money’s worth” rule)

- “금전 가치” 원칙(the “money’s worth” rule)이란 근로자로서 다음의 이득을 얻게 되면, 그 이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임
 - 돈으로 환전 가능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이득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나 채무 등을 고용자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 급료 대신 받은 이득

2)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칙(specific rules to all employees)

- 모든 근로자들 혹은 근로자의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에게 바우처(voucher)나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임
- 이 경우 고용주가 개인이고, 가족관계나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바우처나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가) 주거시설 제공

- 근로자들 혹은 근로자의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주거시설을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됨⁵³⁾
 - 이득산정 방식: 연간 이득의 가치 혹은 주거시설 임대료에서 근로자가 제공한 상품가치를 빼 것 중 큰 것
 - 여기에서의 연간이득이란 자산의 총과세평가액을 말함
 - 여러 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주거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이득은 각자 이득의 총합이 한명의 근로자가 동일 주거시설을 사용할 때의 이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됨
-
-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예외조항들은 아래와 같음
 - 직무의 특성상 특별한 주거시설이 필요로 한 경우(ex: 사무실 건물에 있는 관리인 아파트)
 -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었고,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 경우(ex: 농장이나 산림지의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주거시설 제공 관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수치나 관례가 이루어졌던 횟수 등이 고려됨

53) ITEPA 2003, Pt. 3, Ch. 5

- 업무의 특성상 위험에 대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일환으로 주거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주거시설

나) 바우처(Voucher) 제공

-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바우처를 통한 이득이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됨
 - 바우처(voucher)란 돈이나 상품,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나 각종 증표, 쿠폰 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여행기차표, 수표, 신용카드 등도 포함됨.
 - 고용주가 바우처 제공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이 소득세부과의 기준이 됨
- 바우처를 통한 이득임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예외조항
 - 사내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시설 사용 권한에 관한 거래 가능한 바우처이거나 고용주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엔터테인먼트 권한에 관한 교환 가능한 바우처인 경우
 - 직장이나 직장 근처의 주차권에 대한 바우처
 - 특정 여행에 대한 보증, 군대 구성원으로서 이동이나 여행에 대한 허가와 비용지불 등
 - 특정 식사권

3) 이사(理事)와 특정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 이사(理事)와 특정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이사(director)와 연소득이 8,500파운드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됨. 연 8,500파운드는 영국 평균임금보다 낮은 금액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근로자들만을 제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이사(director)나 근로자의 가족이 받은 혜택의 경우에도 이사(director)나 근로자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됨

가) 이사(director)

- 세법상 이사(director)란 이사회나 그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책임이 구성원들에게 있는 경우, 그 구성원들을 의미함
 - 지시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그 지시자도 세법상 이사임
 - 그러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됨

- 세법상 이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 회사에서 받는 총수입이 8,500파운드 이상인 경우, 혹은
- 회사에 주요 이해관계⁵⁴⁾가 없고, (i) 고용 이사이거나 (ii) 회사가 비영리 단체인 경우

나) 이사(理事)와 연소득 8,500파운드 이상의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

(1) 원칙

- 이사(理事)와 연 소득 8,500파운드 이상인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 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다음의 항목들도 해당됨
 - 각종 편의시설(주거시설 제외), 오락, 서비스 제공 등
 - 사적인 용도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와 연료제공
 - 무이자 또는 저리의 대출
 -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
 - 의료비 보험

54) 회사자본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회사 해체시 자산의 5% 이상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 주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2) 주요 예외조항

□ 고용주가 제공하는 버스 서비스

- 작업장 출퇴근을 위하여 제공하는 버스의 경우, 버스이용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고용주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 이외에 공공운송시설 사용을 위한 티켓 등도 포함됨
- 12인승 이상의 버스여야 하며, 평상시에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어야 함

□ 고용주가 제공하는 탁아시설

-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탁아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의 경우 과세되지 않음
- 단, 다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됨
 - 근로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자의 비용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함
 - 탁아서비스가 개인의 사적 주거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 고용주가 직접 탁아시설을 운영하거나, 탁아시설 운영에 대하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함
 - 등록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비과세됨
- 직접적인 식사제공이나 기타 식권 등도 포함됨
- 작업장이나 작업장 근방에서 제공되어야 함
- 호텔이나 음식점, 기타 유사 시설에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단, 영업장 일부를 근로자에게만 제한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 사택근무의 경우 고용주가 가정용품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 매주 2파운드까지는 세금면제를 위한 증거자료가 요구되지 않으나, 2파운드 이상부터는 증거자료가 요구됨

- 휴대폰
 -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경우, 사적인 용도의 통화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컴퓨터
 - 저가 또는 무료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컴퓨터의 경우, 500파운드 한도까지의 혜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대여했던 컴퓨터를 시장가격에 근로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그 밖의 과세예외조항
 - 작업장의 편의시설, 각종 자재, 서비스
 - 사망이나 은퇴시 제공되는 금액(ex: 퇴직금 등)
 -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 작업장의 운동이나 레크레이션 시설
 - 최소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영국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 해외출장시 제공되는 의료혜택이나 보험
 - 작업장의 의무실
 - 작업장이나 인근의 주차시설
 - 통근용 자전거의 안전장치
 - 야근에 따른 부수비용

- 2005년 9월부터 고용주가 full-time 교육중인 근로자에게 지불한 15,000파운드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15,480파운드로 면제금액이 증액되었음

3) 과세소득 산정 방식

(1) 과세소득 산정방식의 기본원칙

- 과세소득 산정방식의 기본원칙은 고용주(혹은 다른 제3자)가 지출한 비용에서 근로자가 제공한 상품의 가치를 뺀 것임
 - 고용주가 제공한 혜택의 경우(ex: 항공사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항공권, 사립학교 교사 자녀에게 제공되는 입학 등) 법원에서는 고용주가 지출한 비용이란 근로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러한 산정방식에 따르면, 실제 과세소득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여분의 빈 항공권 좌석들을 항공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실제 추가로 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용은 거의 없기 때문임

(2) 과세소득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 과세소득의 산정방식은 소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산정방식과 기준이 각각 다름. 주요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고용주 자산의 경우, 자산의 소유권은 고용주에게 남아 있는 경우
 - 고용주의 지불비용은 자산가치, 또는 처음 제공되었을 때 자산의 시장공정가액 20%로 간주
- 무이자 또는 저리의 대출의 경우
 - 고용주의 지불비용은 공시 이율로 산정함
 - 5,000파운드 이하의 대출의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동차의 경우
 - 회사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과세소득

이 달라짐

-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 대비 비율로 과세소득이 결정됨
 - 가장 낮은 수준의 배기가스 배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의 15%가 과세소득으로 산정됨
 - 1km당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gram으로 보아, 1g/km당 1%로씩 퍼센트가 증가하며, 최고 35%까지 과세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음
- 대체연료나 대체기술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과세소득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마일리지

- 근로자가 자신의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으로 업무상 여행을 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일정비용은 비과세됨
- 일정비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부과되며, 과세금액은 마일당 세율이 규정되어 있음

□ 고용주가 이사(director)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이사의 급여 지급시,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이 이사에게 회사가 지급한 이득으로 봄

□ 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근로자가 시장가보다 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가액과 구입가격 간 차액을 고용주가 대출해 주는 것으로 보고, 매년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함
- 만일 그 이후 근로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대출금액에 대하여 갚는 것으로 봄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 위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지원금 형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임을 알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지원금 형태 외의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비과세의 비중은 소득세에서 적은 편임
 -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금 등의 환금성을 지닌 근로복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 근로복지소득에 대하여 엄격한 비과세요건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음

- 주택지원
 - 주택지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비교해 보면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우리나라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에 대하여는 비과세임

〈표 IV-1〉 주요국의 급여 외 복리후생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근로복지 지원금 제도관련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당해 소득금액의 50%의 한도까지 손금인정 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및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일정부분 인정 근로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 비과세 	N/A	N/A	N/A
근로복지 지원금 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식사대, 학자금, 국민건강보험료, 보육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한 요건을 갖춘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물급여, 현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세 가지 원칙 ¹⁾ 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함	일정한 요건 ²⁾ 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즉, 급여 외 복리후생의 성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함

주: 1) ① “금전 가치” 원칙
 ②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칙
 ③ 이사와 특정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특칙
 2) 현금 등의 환금성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현물급여의 경우 비과세 됨

〈표 IV-2〉 주요국의 주택지원에 대한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일반	사내복지기금			
주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과세¹⁾ 예외: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비과세	근로여건으로서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할 경우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과세 예외: 직무상 특별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주택취득자금의 대여는 무이자 또는 연 1% 미만의 이자율로 대여 ²⁾ 해 주었을 때만 제외하고 비과세

주: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 실제로 지불한 이자상당액 - 무이자 또는 연 1% 미만의 이자율로 계산 이자 = 근로소득

□ 학자금

- 대부분의 국가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및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비과세해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은 비과세임

〈표 IV-3〉 주요국의 학자금에 대한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일반	사내복지기금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과세¹⁾ • 예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와 관련된 학자금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 비과세 	비과세	각 연도의 \$5,250의 한도까지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과세 - 예외: 업무관련 훈련교육의 경우 비과세 	사업체와 관련 있는 학자금 등이 적정한 경우 비과세

주: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체육시설

- 미국 및 영국은 작업장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 비과세를 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과세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은 비과세해 주고 있음

〈표 IV-4〉 주요국의 체육시설에 대한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일반	사내복지기금			
체육문화	과세	비과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비과세	작업장의 운동시설이나 레크레이션 시설의 경우 비과세	과세

□ 보육급여

- 대부분의 국가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과세⁵⁵⁾하고 있음

〈표 IV-5〉 주요국의 보육급여에 대한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일반	사내복지기금			
보육급여	비과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¹⁾의 한도까지 비과세 • 입양지원의 경우 비과세 	고용주가 제공하는 탁아시설의 경우 비과세	과세

주: 1) 맞벌이인 경우 각각 신고시 \$2,500

2. 요약 및 시사점

- 아래의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복지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의 명문규정이 없으며, 행정해석상 증여세로 보고 있음⁵⁶⁾
 - 다만,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근로복지소득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에 의해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따라서,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근로복지소득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제공하는 소득임

55) 과세되는 보육에 대한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56)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음

- 이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일반적인 근로복지소득과 다를 바가 없음

〈표 IV-6〉 주요국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일반	사내복지기금			
근로소득	명시규정 없음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 우리나라와 주요국에 대한 근로복지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복지소득을 제공할 때,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적격한 요건을 갖춘 현물급여”이면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허용해 줌
 -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근로복지소득을 제공하는 국가는 비교국가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복지소득이 제공되는 경우 현금 등의 환금성을 가진 경우에도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고 있음
 -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임
-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함
 -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명문규정이 세법상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성격에 대한 논란⁵⁷⁾이 있음
 -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명문규정이나 판례는 없지만, 행정해석에 의해 상증법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을 뿐임

57)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상속및증여세법상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러나, 사용자와 경제적 이익의 지급자가 다른 경우에 소득구분에 대한 판례⁵⁸⁾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즉, 사용자와 급여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임
 - 영국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복지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당해 기업이나 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음⁵⁹⁾
 -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즉 근로복지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함
 - 따라서,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의, 비과세 요건 등의 규정을 소득세법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근로복지소득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⁶⁰⁾
 - 상대적으로 고액연봉을 받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비과세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맞지 않음
- 따라서,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해서 현행보다 비과세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거나 한도금액을 설정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함
- 근로복지지원금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58)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이와 유사한 일본의 판례 最高裁平成16년(行ヒ)第141号, 判例集 第59卷1号64頁

59) Wright v Boyce(HMIT) [1958] 1 WLR 832; Moorhouse (HMIT) v Dooland [1955] Ch 284; Blakiston v Cooper [1909] AC 104

60) 김동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 확대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 근로복지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주요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 등의 환금성이 있는 근로복지소득”이 아니고, “전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지금 현행보다 비과세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비과세가 되는 금액의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동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 확대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10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 박찬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확대방안에 관한 쟁점별 세부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2007. 12
- _____,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와 연합기금 논의」, 『노동리뷰』, 2008년 1호, 한
국노동연구원, 2008
- 한국노동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 확대방안 연구」, 노동부, 2006.
10
- 유규창, 「미국기업의 최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동향」, 『임금연구』, 2001년 여
름호
- 이철재, 『세법강의』, 2007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4
- 조병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2
- 조연훈 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과 과세문제」, 2003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07-08
- Tiley & Collision, UK Tax guide, 2006-07
- Tolley's Tax Guide, Tolley, 2007-08
- IRS, "Employer's Tax Guide to Fringe Benefits", 2008
<http://www.irs.go.us>
- <http://www.hmrc.gov.uk>
- <http://www.ibfd.org>
- [www.//nta.go.jp](http://www.nta.go.jp)

세법연구 08-07

주요국의 근로복지 세제지원에 대한 비교연구

2008년 9월 5일 인쇄

2008년 9월 9일 발행

저 자 김 진 · 김정아 · 문예영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401-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